오산시의회 공고 제2021-46호

오산시의회 자치법규안 예고

「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괄개정조례안」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1년 12월 31일

오산시의회의장

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괄개정조례안 (장인수 의원 대표발의)

1. 제안이유

○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 하도록 해당조례의 인용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연번	해당 자치법규	인용조문 개정내용
1	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	지방자치법 제33조 → 제40조 등
2	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	지방자치법 제41조 → 제49조 등
3	오산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	지방자치법 제42조 → 제51조 등
4	오산시의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	지방자치법 제41조 → 제49조 등
5	오산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	지방자치법 제38조 → 제46조

3. 조례안 : 붙임

4. 의견제출

○ 제출기일 : 2022년 1월 6일까지

○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

○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전화번호, 의견

○ 제출기관 : 오산시의회(전문위원실)

· 우편번호 : 447-701

· 주 소 :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오산시의회)

· 전 화: 031)8036-8023, ·팩 스: 031)375-2875

· 전자메일 : pk1121@korea.kr

자치법규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	: 지방자치법	개정에	따른	인용조문	일괄개정조례안
□ 의견제출자					
○ 성명(단체]명) :				
0 주	소 :				
○ 저 화 번	रुं ∶				

자치법규안 내용		여 부	- 의 견	<u></u> 견	비고
	찬성	반대	·		

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괄개정조례안

(장인수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제8-634호

발의년월일 : 2021년 12월 30일

발 의 의 원 : 장인수, 김영희, 김명철, 이상복,

성길용, 이성혁, 한은경 의원

□ 제안이유

○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 하도록 해당조례의 인용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연번	해당 자치법규	인용조문 개정내용
1	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	지방자치법 제33조 → 제40조 등
2	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	지방자치법 제41조 → 제49조 등
3	오산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	지방자치법 제42조 → 제51조 등
4	오산시의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	지방자치법 제41조 → 제49조 등
5	오산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	지방자치법 제38조 → 제46조

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괄개정조례안

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(「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오산 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조 중"「지방자치법」제33조"를"「지방자치법」 제40조"로 한다.

제4조 중 "관하여는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제33조 관련 별표 5"를 "관하여는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6"으로 한다.

제2조(「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오산시 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"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"를 "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"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2호 중 "제113조 내지 제116조"를 "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"로, "법 제117조"를 "법 제131조"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"법 제146조"를 "법 제163조"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"법 제104조제2항"을 "법 제117조제2항"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"법 제9조"를 "법 제13조"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"법 제41조"를 "법 제49조"로 한다.

제11조제3항 중 "법 제41조"를 "법 제49조"로, "「오산시의회증인등비용지급에 관한조례」"를 "「오산시의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」"로 한다.

제3조(「오산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오산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"「지방자치법」제42조"를"「지방자치법」 제51조"로 한다.

제2조제1항제3호 중 "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"를 "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"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"법 제117조 및 제120조"를 "법 제131조 및 제 134조"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"법 제146조"를 "법 제163조"로 한다.

제4조(「오산시의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」의 개정) 오산시의회증인 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오산시의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"를 "오산시의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"로 한다.

제1조 중 "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제3항"을 "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"으로 한다.

제5조(「오산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」의 개정) 오산 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조 중"「지방자치법」 제38조제2항"을"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제2항"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「지방자</u>	제1조(목적) <u>「지방자치</u>
<u>치법」제33조</u> 및「같은법 시행	법」 제40조
령」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	
산시의회의 의원에 대하여 지급	
하는 의정활동비・월정수당・	
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	
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	
다.	.
제4조(여비 지급 기준) 여비지급	제4조(여비 지급 기준)
에 관하여는 「지방자치법 시행	관하여는 「지방자치법 시
<u>령」제33조 관련 별표 5</u> (지방	행령」 제33조제1항제3호 관련
의회의원 여비 지급범위)에 의	별표 6
한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을 적	
용하여 지급한다.	

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「지방자</u>	제1조(목적) <u>「지방자</u>
치법」 제41조 및 동법시행령	치법」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
<u>제52조</u> 에 따라 오산시의회가 행	령 제53조
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	
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기	
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	
적으로 한다.	,
제5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	제5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
관)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	관) ①
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「지방자치법」 (이하"법"이	2
라 한다) <u>제113조 내지 제116</u>	<u>제126조부터 제129조</u>
조에 따른 오산시의 소속 행	까지
정기관과 <u>법 제117조</u> 에 따른	<u>법 제131조</u>
하부행정기관	
3. 오산시가 설치한 <u>법 제146조</u>	3 <u>법 제163조</u> -
에 따른 지방공기업	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
5. <u>법 제104조제2항</u> 과 제3항에	5. <u>법 제117조제2항</u>
따라 위임·위탁된 사무를 처	
리하는 단체나 기관(다만, 본	
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하	
는 경우로 한정한다)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제6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)① 감사 또는 조사는 <u>법 제9</u>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다.

②·③ (생 략)

제9조(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) ① 법 제41조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시장,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, 증인 및 의견 진술의 요구는 그 현지확인일, 서류제출일, 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.

② ~ ⑤ (생 략)

제11조(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) ①·② (생 략)

③ 법 제41조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·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해서는 「오산시의 증인등비용지급에 관한조례」에 의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.

제6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
무) ① <u>법 제13</u>
<u>조</u>
,
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9조(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) ①
법 제49조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11조(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)
① • ② (현행과 같음)
③ 법 제49조
<u></u> 「오산시
의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
조례
<u>.</u>

오산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「지방자</u> <u>치법」제42조</u> 에 따라 오산시의 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<u>「지방자</u> <u>치법」제51조</u>
제2조(범위) ① 오산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 또는 위원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 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조(범위) ①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3. 「지방자치법」(이하"법"이 라 한다) <u>제113조부터 제116</u> <u>조까지</u> 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 의 장	3 <u>제126조부터 제129조</u> <u>까지</u>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의 회의장(이하 "의장"이라 한다) 이나 위원회위원장(이하 "위원 장"이라 한다)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공무원 등이 대신 출석·답변할 수 있다.	②
1. <u>법 제117조 및 제120조</u> 에 따 른 시 소속 하부행정 기관의 장	1. <u>법 제131조 및 제134조</u>
2. 시가 설치한 <u>법 제146조</u> 에 따 른 지방공기업의 임원·본부장	2 <u>법 제163조</u>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
오산시의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오산시의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 <u>조례</u>	오산시의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지방자치</u>	제1조(목적) <u>지방자치</u>
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	법」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
령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	시행령 제47조제3항
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	
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지정	
된 장소에 출석한 증인, 감정인	
및 참고인(이하 "증인 등"이라	
한다)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	
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	
로 한다.	

오산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「지방자</u>	제1조(목적) <u>「지방자</u>
<u>치법」 제38조제2항</u> 에 따라 오	<u> 치법」 제46조제2항</u>
산시의회 의원의 전문성 확보로	
의정 및 오산시 행정 발전에 이	
바지하기 위하여 오산시의회 의	
원연구단체 운영을 통한 의원의	
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에 필	
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	
한다.	